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훈기・박지혜

박해철 • 오세희 • 정동영

정준호 · 정진욱 · 민형배

이개호 · 김문수 · 송재봉

전진숙 • 서영석 • 신정훈

이용우 · 위성곤 의원

(17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,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,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,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 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 도록 현행법의 '자동차'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,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 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). 법률 제 호

##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"을 "건설기계를"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"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"를 "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·특수자동차·이륜자동차(같은 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)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건설기계"를 "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트럭·콘크리트펌프"로 한다.

제1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기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자동차"란 다음 각 목의 어	1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	
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	<u>건설기계를</u>
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	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<u>제2조</u>	가 <u>제3조</u>
제1호에 따른 자동차	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
	<u>· 승합자동차 · 화물자동차</u>
	<u>• 특수자동차 • 이륜자동차</u>
	(같은 법 제2조제1호 본문
	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
	제외한다)
나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	나
조제1호에 따른 <u>건설기계</u>	<u>건설기계로</u>
	<u>서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</u>
	서트럭·콘크리트펌프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⑥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	

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전기자동차
- 2. (생 략)
- ⑧ ~ 12 (생략)

-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-		-	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-----.

- 1. 전기자동차(전기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
- 2. (현행과 같음)
- ⑧ ~ 12 (현행과 같음)